

報道資料

대우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 플랜) 관련
金融市場安定 綜合對策

'99. 11. 4

財政經濟部
金融監督委員會
韓國銀行

◇ 目 次 ◇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II. 대우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부담 추정

III. 금융권별 정상화 대책

1. 투신·증권사

2. 은행

3. 서울보증보험

4. 기타 금융권

IV. 기타 금융시장 안정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 문답자료 : 별첨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7.19) 이후 투신사 환매가 급증하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이에따라 수익증권 환매대책(8.12) 및 후속 시장안정대책(8.26, 9.18)을 마련·시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지속
- 또한 10.4일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음
 - * 금리 한자리 수 유지, 개인·일반법인에 대한 대우채권 지급비율 보장,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 등
- 금융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장 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에 힘입어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 회사채금리(3년) : ('99.6말) 7.96% → (9.17) 10.82% → (11.3) 9.12%
 - * 종합주가지수(p) : ('99.6말) 883.00 → (10.5) 791.55 → (11.3) 887.15
 - * 환율(W/\$) : ('99.6말) 1,157.6 → (9.29) 1,217.7 → (11.3) 1,191.9
 - * 외평채가산금리(10년, bp): ('99.6말) 210 → (8.11) 280 → (11.2) 216
-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 기관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 금융기관에의 영향을 미리 점검하여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도록 함

2. 기본방향

-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권별 손실부담을 투명하게 밝하고 이를 감안하여 금융권별 대책을 강구
- 투신·증권사에 대해서는
 - 투신사 수익증권 보유 개인 등에 대하여는 약속된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을 철저히 보장
 -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의 손실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 대주주가 분명한 투신·증권사에 대하여는 대주주 증자 등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유도
 - 누적적자가 크고 대주주가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 자금 등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 조기 추진
 - 이와 함께 자산운용의 투명성제고와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관련대책도 추진
- 은행에 대하여는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여 건전성을 계속 유지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지급 실시
- 아울러 저금리 유지 및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II. 대우 워크아웃계획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부담 추정

-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약 31.2조원으로 추정

※ 금융기관 여신금액(채권금융기관이 주관은행에 신고한 금액 기준, 여신 + 보유채권등 약 57.0조원)에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잠정)을 적용

은 행	22.0조원(38.6%)중	약 12.5조원
투 신 사	18.6조원(32.6%)중	약 10.4조원
서울보증	7.2조원(12.6%)중	약 3.4조원
종 금	2.9조원(5.1%)중	약 1.8조원
보 험	1.1조원(1.9%)중	약 0.6조원
증 권	1.1조원(1.9%)중	약 0.7조원
기 타	4.1조원(7.3%)중	약 1.8조원

※ 대우캐피탈, 다이너스 클럽 제외

-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부담은 동 채무조정 대상금액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최대 부담을 전제로 시장안정대책을 마련
- 또한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이 이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향후 점차 나타나게 되며
- 채무조정 일환으로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지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 가능

III. 금융권별 정상화 대책

1. 투신·증권사

가. 손실분담원칙

- 개인 등에 대하여 50~95%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산운용사인 투신운용사와 판매사인 증권사가 공동부담
 - 손실분담비율은 수수료 배분비율 등을 감안하여 기합의
- 고객환매에 대하여는 법상 1차 환매의무자인 증권사가 손실 부담액 전액을 우선 지급
 -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 손실분담은 사후 정산

나. 손실부담규모 추정

- 대우 무보증채권(18.6조원) 중에서 개인·일반법인에 대한 지급 보장이 적용되는 대우채권(8.1조원)의 총손실은 약 4.6조원 수준으로 추정
 - 투신사 1.3조원, 투신운용사 0.4조원, 증권사 1.5조원, 개인·일반 법인 1.4조원 각각 손실분담 추정

대우무보증채권 관련 손실분담 추정

(단위:조원)

투신(운용)사 및 증권사 부담손실			개인	일반법인	총 계
투 신 사 (3개,판매·운용 겸영)	투신운용사 (21개,운용전담)	판매증권사 (32개)	소 계		
1.3	0.4	1.5	3.2	1.4	4.6

- 주 1) 대우계열사별 손실규모 산정시 채무조정비율(잠정) 적용
2) 투신운용사와 판매사간 손실분담 비율은 2:8을 적용
3) 투자자 부담, 개인·투신사등간 분담액은 환매가 분산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가능

다. 투신(운용)사 정상화 대책

- 대부분의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금년도 이익, 수수료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무보증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할 수 있음
- 일부 자체해결이 어려운 투신(운용)사 등에 대하여는
 -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서 자체 해결※ 현대투신증권은 6천억원, 현대투신운용은 1천억원 증자계획을既발표
 - 대주주가 없는 대형 투신사(한투, 대투)는 누적적자가 크고 대우부실도 큰 규모이므로 공공자금 투입 등으로 정상화 추진
 - 최저 자본금(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후
 -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주주 등이 출자(총 3조원: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 국책은행이 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를 책임지도록 함

- ▶ 산업은행은 한투(1조 3천억원), 기업은행은 대투(6천억원)에 출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여력을 확보하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양 기관에 출자 지원(정부가 산업은행에 6천억원,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에 4천억원)
 - ▶ 정부는 한투(6천억원), 대투(3천억원)에 현물 출자※ 기존주주(은행·증권 등)도 한투(1천억원), 대투(1천억원)에 증자

-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부실규모가 큰 대형투신사 등에 대하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
 - 이를 위해 증권금융의 증금채 발행한도 확대(현행 자기 자본의 10배,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 투신(운용)사의 보유채권중 대부 무보증채권 이외에도 통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실화된 채권이 있으나 투신사가 자체 흡수하는 등으로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임
 - '99.8.12 현재 총 6.6조원(부도·법정관리기업 채권 2.6조원, 기타부실채권¹⁾ 4.0조원)으로 이들 중 회수가 어려운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투신사에서 균등하게 상각하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 주 1) 기타 부실채권 : 워크아웃 대상기업 등
2) 6.6조원중 50%가 회수되는 경우 남게되는 부실은 3.3조원으로 투신사 전체 수탁고(약 212조원)의 1.6% 수준에 불과
- 이러한 부실채권은 상당부분을 한투·대투가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자금 투입 및 유동성지원 등으로 이들 투신사의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될 예정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투신사의 경우 비대우부실채권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자기자본, 수수료 수입 등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

라. 투신산업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대책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수탁고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의무화(투신업법 개정)
 - 이사회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최저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함
-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 법인의 1/2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의 감시 기능을 제고(투신업법 개정)
 - * 대표소송 : 0.01% → 0.005%,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 3% → 1.5%
- 법령준수여부 감시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투신업법 개정)

(2)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공시 강화

-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투신업법 시행령 개정)
-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및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투신업법 개정)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여부, 비중 등의 투자내용을 상세히 포함(투신업법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3) 투신상품의 경쟁력 강화

- 앞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투신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신사 수신 여력을 확충

▶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조기 허용

- 중소기업 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동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여건 조성
 - 원금손실 발생시 투신사 등의 투자분으로 이를 우선 충당 토록 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부여
 - 투자자 환금성 보장을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
 - 공모주 우선청약권 부여(유가증권등 인수규정 개정)
 -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하여 10% 저율과세(1년내 가입한 저축자에 대해 적용)
 - 채권의 양도·평가손실 발생시 과세소득에서 차감

▶ 고수익등급 채권에 대해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

- 투신사 보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담보로 한 ABS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
 -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으로 발행하되, 필요시 신용보완을 위해 금융기관등 보증 추진

마. 투신사보유 대우무보증채권의 유동성 확보방안

□ 대우채권을 유동성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여 투신사가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투신사보유 대우 무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추진

□ 매입 방법

-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신규로 발행된 대우채권(회사채 + 주식 등)을 성업공사에서 매입

□ 매입조건

- 성업공사가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으로 확정 매입
- 매각대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현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또는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 채권 (ABS)으로 지급
- 개인·금융기관 등 모든 수익자 소유분에 모두 적용

□ 매입시기 : 필요 조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 시작

※ 투신사가 성업공사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펀드에 채무조정 채권 그대로 편입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조정채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조치

- 성업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신탁약관 변경 승인

2. 은행

- '99년 말부터 대우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하여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전망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 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
 - 그동안 은행권은 FLC 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미 대우 여신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 후순위채 발행, 해외DR 발행 등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기 자본이 확충되어 대우여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99말 추정 BIS비율은 은행평균 약 12% 수준으로 추산됨
- 대우여신과 관련하여 실제 손실보다 크게 나타나는 「채무조정 대상금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적립도록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FLC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나누어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이를 적용할 경우 은행전체의 BIS비율은 10.5% 수준으로 높게 추정됨

3. 서울보증보험

- 대우그룹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지급

- 원 금

- 워크아웃 플랜에서 채무조정된 원금부분(출자전환 등)을 만기도록해서 서울보증이 대지급

- ※ 워크아웃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이 보유하는 회사채도 서울보증이 대지급

- 이 자

-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회사채 등의 발행업체가 직접 상환하되, 이자감면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

-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여건으로는 대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공적자금은 추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

4. 기타 금융권

- 대우 워크아웃 플랜으로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도 여신과 수익증권 보유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 영업수익 등으로 자체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필요시 자구노력 등 견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유도해 나갈 것임

IV. 기타 금융시장 안정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운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금리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
 - 시장금리를 한자리 수로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도모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 대우 구조조정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투신·증권사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 규모가 커질 경우에 적극 대비
 - 투신·증권사가 자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여 환매에 대비하고 있으나 환매급증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기금이 추가로 투신사 보유 채권 등을 무제한 매입하여 환매자금지원 (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 11.3 현재 총 18.8조원의 자금을 조달(출자 : 10.9조원, 채권매각 : 7.9조원)하여 12.6조원의 채권 매입

▶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 한국은행은 투신·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 (RP)매매로 자금지원

▶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 투신사에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허용, 보유채권에 대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 허용 등

※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허용

-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만기가 '99.1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기연장 희망시 이를 허용
- '99.10 현재 총잔고 4조 2,752억원중 '99.12월 5,733억 원, 2000년 1/4분기중 8,986억 원 만기 도래
- 만기연장 반대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참 고 1 투신(운용)사 손실부담액 추정

(단위 : 억 원)

투신(운용)사	자기자본 ²⁾	경상이익 ³⁾	수수료수입 ⁴⁾	손실부담액
한국투신	△11,544	6,483	4,091	8,924
대한투신	△5,985	5,079	3,835	3,989
현대투신	222	102	601	942
제일투신	250	8	92	270
삼생투신	306	109	268	180
동양투신	346	827	555	392
대신투신	320	63	213	12
동원투신	331	97	106	4
서울투신	470	200	907	564
L G 투신	455	158	202	7
교보투신	428	200	194	130
신영투신	348	66	41	6
신한투신	426	179	491	190
국은.투신	344	9	16	2
한화투신	330	41	61	4
한일투신	407	172	390	148
S K 투신	343	48	93	43
동부투신	340	47	37	4
템플턴투신	319	40	67	1
삼성투신	509	248	732	180
조홍투신	521	300	794	449
한빛투신	524	315	949	355
외환투신	413	146	302	48
주은투신	517	339	900	278
계		15,276	15,937	17,122

주 1) 자료원 : 투신협회 및 증권업협회 추정치

2) '99. 9말 기준 3) 최근 1년('98.10 ~ '99. 9말) 기간중

4) 투신운용사와 증권사 손실분담비율 = 2 : 8

5) 대우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잠정) 적용

참 고 2 판매사 손실부담액 추정

(단위 : 억 원)

판매사	자기자본 ²⁾	경상이익 ³⁾	수수료 수입 ³⁾	손실부담액
건설증권	400	118	-	-
교보증권	2,045	1,179	306	218
굿모닝증권	4,509	1,685	120	50
대신증권	11,707	4,099	385	52
대우증권	22,035	4,673	1,365	3,005
대유리젠트	2,247	788	31	78
동부증권	1,547	551	67	18
동양증권	3,983	965	242	263
동원증권	9,455	3,933	594	114
삼성증권	14,302	5,540	1,826	2,590
삼성투신	2,308	1,548	1,469	679
서울증권	2,985	362	17	20
세종증권	2,157	761	3	-
신영증권	4,882	1,741	118	26
신한증권	2,470	1,131	157	53
신흥증권	1,426	587	65	7
유화증권	2,850	740	42	30
일은증권	2,497	576	20	47
제일투신	714	473	803	863
조흥증권	1,495	670	135	108
하나증권	2,215	854	27	17
한누리증권	934	295	21	2
한빛증권	3,856	1,322	95	111
한양증권	1,207	590	2	-
한진증권	2,138	679	174	30
한화증권	3,479	1,583	85	37
현대증권	18,405	7,922	2,347	2,284
현대투신증권	△4,594	5,719	6,638	3,643
환은살로만	846	346	31	1
LG증권	13,618	6,469	1,326	878
SK증권	1,390	483	127	91
부국증권	2,399	440	-	-
국민은행	40,495	9,193	10	37
외환은행	25,778	3,988	22	7
한빛은행	39,874	△812	41	23
조흥은행	28,617	6,149	1	1
주택은행	20,463	1,941	55	41
계		79,281	18,767	15,424

주 1) 자료원 : 투신협회 및 증권업협회 추정치 2) '99. 9말 기준
 3) 최근 1년('98.10 ~ '99. 9말) 기간중 4) 기타 가정은 투신(운용)사와 동일

別添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관련
問 答 資 料

목 차

1.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에 대하여 개인 등 일반 투자자는 기간별로 50~95%를 보장하고 있는데, 투신, 증권사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2.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 손실분담원칙은 무엇인가? 손실분담 원칙대로 손실을 분담했을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투신 운용사가 있는가? 있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가?
3. 부실이 심한 한국·대한투신을 퇴출시키지 않고 공공자금을 지원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은 과거 한남투신처리 등과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4.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5. 한투·대투의 합병이나 해외 매각계획은 없는지?
6. 대우채권에 대한 80% 지급보장이 이루어지는 11. 10일을 전후 하여 수익증권 환매증가동으로 금융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Workout Plan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지급방법은?
8. 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9. 한국투신, 대한투신의 경우 기존 부실이 상당한데 과연 3조원으로 충분한지? 기존 고객들은 계속 믿고 거래해도 되는지?
10. 산은과 기은이 부실기업인 한투·대투에 출자하게 될 경우 동반 부실화될 염려는 없는가?
11.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은행이 상업적 기관인 대한투신을 인수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12. 금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1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 채에 대해 개인등 일반 투자자는 기간별로 50~95%를 보장하고 있는데, 투신, 증권사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 8.12 조치이후 정부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환매 시기에 따른 기간별 대우채권 지급 비율(50~95%)은 확실히 이행될 것임
 - 지급보장은 원칙적으로 투신사 및 증권사의 손실 분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 대부분의 판매증권사 및 투신사의 경우 금년들어 영업의 신장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규모 발생하는 등 자체 자금으로 대우채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임
- 기존부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영사중
 - 한국·대한투신의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출자등을 통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 현대투신도 금년말에 대규모 중자를 계획하고 있어 지급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투신운용시와 판매
증권사간 손실분담
원칙은 무엇인가?
손실분담원칙대로 손
실을 분담했을 경우 자
본잠식상태에 빠지는
투신사가 있는가?
있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가?

- 투신협회와 증권업협회는 10월 27일 각각 회원사 대표 모임을 개최하고
 -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투신·증권사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그 손실분담은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배분비율에 의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손실분담할 경우 대부분의 투신·증권사는 자기자본, 영업이익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필요시 대주주등의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
- 다만, 누적적자 규모가 크고 뚜렷한 대주주가 없어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 국책은행 및 정부, 기존 주주 등의 출자에 의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 대우 Workout Plan이 마련되고 손실률 규모가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크게 해소되고
 - 금리안정 등 주변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각 투신(운용)사 및 증권사의 정상화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

3 부실이 심한 한국·
대한투신을 퇴출시키지
않고 공공자금을 지원
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은 과거 한남투신처럼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한남투신의 경우, 지난해에 경영부실의 심화와 대주주인 거평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대량 환매사태에 따른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 수탁고 규모가 약2.8조원에 불과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현대투신(당시 국민투신)이 인수의사를 밝힐 때 따라 인수방식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음
- 반면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는 신탁자산의 규모가 각각 한남투신의 10배에 달하는 25조원대에 이르고 관련고객수가 300만명을 넘고 있어
 - 적절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리에 따른 부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의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자금이동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는 그 동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추진과 최근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일정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공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

4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 향후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정부의 출자결정과 이사회를 통한 감자 및 신주발행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약 6~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면 금년 12월중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공공자금등이 실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한투·대투의
합병이나 해외 매각
계획은 없는지?

- 현재로서는 합병이나 해외 매각계획이 없으며
 -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 주주가 출자하여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 한국투신 2조원, 대한투신 1조원

- 추후 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일부지분의 해외 매각등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6. 대우채권에 대한
80% 자금보장이 이루어
지는 11.10일을 전후하여
수익증권 환매 증기등
으로 금융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1.10일 이후 개인에 대한 환매보장 비율이 50%에서 80%로 높아지나, 환매가 급격히 증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개월을 더 기다리면 95%까지 환매를 보장 받을 수 있고
 - 대우그룹 워크아웃 플랜 발표로 대우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 또한 이번 조치로 투신사의 경영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투신사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
 - 대부분의 투신사는 투신사·증권사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대우 워크아웃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 그동안의 누적적자등으로 자체부담이 어려운 대형 투신사에 대해서는 공공자금등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질 것
- 환매증가에 대비한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하여 투신사 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등 유동성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 성업공사에서 투신사 보유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7 Workout plan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회사채의 지급방법은?

- 일반법인, 개인 등은 대우발행 회사채의 경우에도 다른 기업 발행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지급받게 됨
 - * 직접 지급대행기관(회사채 발행시 약정된 금융기관)에서 수령하거나 또는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하여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다만, 회사채 보유자가 Workout plan 비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 증권예탁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보증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

8 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 투신상품은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따른 손익을 책임지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98년 11월 15일 이후에 설정되는 펀드는 이미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고,
 - 현재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기존펀드(98년 11월 15일 이전 설정펀드)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 앞으로 투신사 펀드에 대해 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시가 평가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임
- 다만, 기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의 조기 전면시행과 관련하여서는,
 - 시가평가 전면 실시시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하여 온 투자자에 일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량환매가 발생할 수 있고
 - 이 경우 환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신사가 보유채권을 매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금융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정부의 기존의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채권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9. 한국투신, 대한
투신의 경우 기준부실이
상당한데 과연 3조원
으로 충분한지? 기준
고객들은 계속 믿고
거래해도 좋은지

- 한투·대투에 대해서는 3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
로써 자본 잠식부분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정상화등에 힘입어 최근들어 상당
규모의 이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금번 조치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 건실한 투신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준고객들은 거래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임

* 경상이익 추이

	98.10~99.3	99.4~99.10
한국투신	3,615억 원	2,868억 원
대한투신	2,695억 원	2,384억 원

**10 산은과 기은이 부실
기업인 한투·대투에
출자하게 될 경우, 동반
부실화될 염려는 없는가**

- 산은과 기은은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출자금액중 각각 1.3조원, 0.6조원을 분담하게 되며
 - 정부는 산은과 기은의 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은행에 0.6조원을 현물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에 0.4조원을 출자할 예정
- 따라서 양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출자하게 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산은 0.7조원, 기은 0.2조원임
 - 동 금액은 산은과 기은의 금년 상반기 순익으로도 Cover되는 수준으로 양 은행의 현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은행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며
 - 한투·대투는 경영정상화후 코스닥시장 등록 등 기업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산은과 기은은 출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동반 부실화의 염려는 없음

11.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은행이 상업적 기관인 대한투신을 약속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대한투신 출자로 출자액만큼 중소기업에 지원할 자금이 감소한다는 우려를 할 수 있으나
 -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의 대한투신 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행에 4천억원을 출자하게 되므로 기업은행의 실질적인 재원 감소는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 이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에 주름이 가자 않도록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여유자금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

- 또한 금번 기업은행의 대한투신 출자를 통하여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 채권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매입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도 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 그레이 펀드(Gray Fund)나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12. 금번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 대우구조조정계획 발표(7.19) 이후 정부의 금융 시장 안정 노력과 금융기관등의 협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 대우구조조정과 투신문제에 따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대우문제해결이 가닥을 잡아가고 금융 기관간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 정부는 투신, 증권, 은행등 금융권별로 근본 대책을 조기 강구하여 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함
-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 투신사등 금융기관의 금융증개기능이 정상화되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여 실물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